

# 建築法 施行規則

건설부령 제 134호

공포 : 1973년 9월 22일

## 차례

- 제 1 조 : 건축허가신청등
- 제 2 조 : 건축허가서 등의 서식
- 제 3 조 : 증축신고등
- 제 4 조 : 위법사항의 보고
- 제 5 조 : 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 제 6 조 : 가사용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
- 제 7 조 : 중간검사
- 제 8 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보고
- 제 9 조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제10조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 제11조 : 안전, 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 제12조 : 위험물의 저장, 처리시설
- 제13조 :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지
- 제14조 :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보고
- 제15조 : 신분증명서의 서식
- 제16조 : 가설건축물
- 제17조 : 용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등
- 제18조 : 건축허가 표지의 설치

# 建築法施行規則

제 1 조 (건축허가 신청 등)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 조 본문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표의 (1)난에 계기하는 도서 및 (2)난 대지 (9)난중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난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물의 종별	도서의 종류	적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모든 건축물	부근안내도	임의 배치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1/100내지 1/200	1. 축척 및 방위 2.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경계선 3.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5. 담, 용벽, 우물, 오물정화조, 배수시설 기타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토지 굴착 부 임의 도	분 경리계획도	1/50내지 1/200	1. 축적 2.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각종 평면도	1/50내지 1/200		1. 축척 및 방위 2. 각 실의 용도 3.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5. 지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6. 복도의 위치 및 폭 7. 비상용 승강기의 위치·기계실·기계 배치와 승강장의 위치 및 폭 8. 기타 승강기·에스카레이터의 위치·기계실 및 기계배치	
오물 정화조의 구조도	1/30		오물 정화조의 평면상세·종횡단면 상세	
4면 이상의 입면도	1/50내지 1/200		1. 축적 2.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구조 3. 물뚝의 육상 둘레부 4. 우편물수취함·국기계양대	
(2) 법 제 5 조제 1 호 내지 제3호 2면 이상의 1/20 또는 1/30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면도 및 부분상세도		1. 축적 2. 거실의 바닥높이, 건축물의 높이, 각 층의 반자높이 3. 벽의 재료 및 높이 4.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의 부분상세 5. 처마길 및 방화문의 구조	

구분 건축물의 종별 도서의 종류 축	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3) 법 제5조제2호 및 제3 구조도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 / 50내지 1/200	6. 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 7. 계단 또는 경사로의 부분상세 8. 붙임들의 뚜께 및 접합방법 9. 범소의 부분상세 10. 담의 단면상세	
구조계산서		1. 축 척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배치평면 3.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단면 4. 철골재의 접합부분 상세 5. 철근콘크리트의 라멘상세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산정 및 단면 산정 과정	
(4) 영 제134조에 해당하는 전 축물 영 제135조에 해당하는 전 축물	비상 조명장치 배선도 비판배선도	1 / 50내지 1/200 1 / 50내지 1/200	1. 축 척 2. 비상전원의 위치 및 배선 비판·배선 및 접지 시설
	부분상세도	1 / 30이상	1. 인입 관로상세 및 인입관단면 2. 단자함의 규격·배관상세 및 단자반상세 3. 플러스 및 닉트의 상세 반자 및 벽의 마감재
(6) 영 제91조에 해당하는 건축 물	실내마감표	—	비상용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상세
(7) 영 제131조에 해당하는 전 축물	비상용 승강기 상세도	1 / 50이상	승강용 승강기 · 에스카레이터 기타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구조
(8) 기타 건축설비에 관한 규 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설비도	임의	옥내 소화전설비 · 스프링크라 설비 · 물분무 소 화설비 · 포말소화설비 · 불연성가스 소화설비 · 증발성액체 ·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옥외 소 화전설비 · 동력소방펌프설비 · 자동화재탐지설 비 · 전기화재경보기 · 화재속보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시 ·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 · 배수설 비 · 연결송수관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 설 비의 상세
(9)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요하 는 건축물	소방설비도	임의	
(2)법 제5조 본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배치도와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그 부분의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법 제48조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배치도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변경후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여 이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군수는 법 제26조제3항·법 제31조의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한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게기하는 도서이외의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건축허가서 등의 서식) ①영 제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부분에 소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 영 제 6조제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허 가의 통지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건축불 허가 통지서로 한다.

**제 3 조** (증축신고등) ① 법 제 5조 단서 및 영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건축(증축·개축)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항의 건축(증축·개축)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하단의 건축(증축·개축)신고증을 잘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법사항의 보고) 법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위법사항시정권고에 불응한 때 또는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① 법 제 7조제 1항 및 영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로, 완료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 준공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 7조제 2항 및 영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 7호서식과 같다.

**제 6 조** (가사용승인신청서 등의 서식) ① 법 제 7조제 3항 단서 및 영 제 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은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 9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서는 별지 제 9호서식과 같다.

**제 7 조** (중간검사) ① 법 제 17조의 2 및 영 제 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영 제 10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건축주에게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보고) ① 법 제 7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증을 교부받은 후 매 2년마다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를 1급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필증사본
2. 배치도
3. 각종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시의 각종 평면도를 포함한다)
4.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 통로부분의 변경전, 변경후의 마감재료표 기타 변경부분의 변경전·변경후의 입면도·단면도

**제 9 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 11조제 1항에서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전설부팅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 1조 각항에 게기하는 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에 “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은 이를 “협의서” 및 “협의”로 한다.

**제 10 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 법 제 9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굴착부분은 그 경사도가 굴착유형 및 토질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비율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돌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할 것. 다만, 시장·군수는 손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축을 쌓거나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굴착유형	토	질	경사도
절 토	연암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 : 0.5
	보래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 : 1.5
	보래질흙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 : 1
	첨토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 : 1
성 토	모든 토질에 공통		1 : 1.5

2. 제 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석축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이하일 것.

구분	서축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	-------

옛쌓기 결토 1 : 0.25 1 : 0.30 —

성토 1 : 0.30 1 : 0.35 —

찰쌓기 결토 1 : 0.20 1 : 0.25 1 : 0.30

성토 1 : 0.25 1 : 0.30 1 : 0.35

3. 굴착부분의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4. 굴착부분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굴착부분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면적의 단을 치울 것. 다만, 시장·군수가 그 굴착부분의 토질·경사도·보강구조물의 안정성 등으로 보아 손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강구조물부분 및 배수를 위한 수로부분을 제외한 굴착부분(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을 포함한다)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잔더부치기로 환경정리(이하 “조경”이라 한다)를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이외에 굴착부분의 손괴의 방지 및 조경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시장·군수가 정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방화구조부분에 사용하는 목모시멘트판 부분

2.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 및 망입유리 부분

3.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반자·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부분

4.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이외의 난간부분

5. 전선·배전판·스위치·콘센트·배관설비의 부분 및 승강기의 삭도부분

6. 온돌의 굴뚝에 사용하는 스페이트판 부분

**제12조**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 ①영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별표 4에 개기하는 것으로서 동표에 개기하는 수량의 2배(석유류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인 수량의 물품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저장시설을 말한다.

②동일 대지안에서 2종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당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수량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에 출입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보고) 법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로 한다.

**제15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6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층인 재해복구용 건축물

2. 홍행 또는 전람회용 건축물로서 높이 13미터 이하의 것.

3. 1층인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이거나 2층인 목조의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등)

①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에 개기하는 공작물(이하 “공작물”이라 한다)의 축조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표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부근안내도 및 배치도	1. 축척·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 물 2. 대지경계선과 그 안의 공작물의 위치
입면도	1. 축 척
단면도	2. 공작물의 높이·재료의 종별 및 치수 1. 축 척
구조상세도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1. 축 척
구조계산서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산정 및 단면 산정과정

②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과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의 축조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첨

부서류 및 도서 중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첨부서류 및 도서와 중복되는 것은 이를 신청서에 표시하고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에 의한 응변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신청서의 부분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조** (전축허가표지의 설치) ①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 18호서식과 같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전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호서식		제 2 호서식	
전 축 주 주		5 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증	③주 소	④성 명
⑤자 계	( )급전축사동록제 호 전화	⑥사무소 주소	⑦성 명
⑧자 계	( )급전축사동록제 호 전화	⑨사무소 주소	⑩상 또는 호
⑪자 계	⑫설업 면허 제 호 전화	⑫주 소	⑬위 치
⑭지 번	⑮지 구	⑯면 계	⑭지 번
⑰전 번	⑱공사종별	⑲도로에 접하는 길이	⑲도로
⑳용 도	기 타 용 도	주	주
㉑용	도	도	도
㉒신 청 구 분	㉓신 청 이의 구 분	㉔합 계	㉕주 차 장 면적
㉖전 축 면적			㉗전 폐 물
㉘면 면적			㉙승 적 물
㉚차 공역 정 일	년 월 일	㉛준공 예정 일	년 월 일

190mm × 268mm(백 상자) 60g/m<sup>2</sup>

7803—1—1(2-1) A(1)  
1973. 9. 6. 승인

(주) 억

1. 전족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성자  
부여  
여기  
이

[별지 제1호서식]

전 측 레 가 셔 (부·분)		일	월	년	제	일	월	년	제
①성	명								
②주	소								
③성	명								
④주	소								
⑤주소및사무소명									
⑥주소및사무소명									
⑦성	명								
⑧자	성								
⑨주소및사무소명									
⑩성명또는성호									
⑪주	소								
⑫위	치								
⑬지	역								
⑭면	적								
⑮전면 도로폭									
⑯	도								
주 요 용 도									
접하는길이									

1.90mm × 265mm(백 쟁지 50g/m<sup>2</sup>)

면적	분	② 신청부분	② 신청 이 부분	② 험	제	② 주차장 면적
③전	죽 면적					
④연	면적					
⑤축	공 예정 일	면	월	일	⑥준공 예정 일	면
⑥구	조					
구분						
신	신 청부분					
총	신 청 이 부분					
면적	③ 험	제				
축	④ 기동차 수(목조 터조에 철근 콘크리트로)					
률	⑤ 흙가게 간의 거리(목조에 한화)					
계	⑥ 풍동이(조적조에 험)					
요	⑦ 거실의 밖자높이(조적조에 험)					
체	⑧ 채고 높이					
호	⑨ 채고 채마 높이					
⑩ 1층 바닥 높이						
전	⑪변 소					
측	⑫단 방					
면	⑬상조명장치					
적	⑭기 타					

주의 : 5 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전축률은 전축법 제 7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보고를 위하여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합니다.

7803-1-1(2-1)A(2)  
1973. 9. 6 승인

## [별지 제 2 호서식]

## 건축물기록지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현 적	법정현 적
------------------------	----------	----------

## 건축주

귀하

별첨 부가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당해 건축물의 데자,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한 건축법, 동시행령 및 조례 외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허가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시장·군수) [ ]

[ ]

## [별지 제 3 호서식]

## 건축(층·면적) 신고서

건축(층·면적)		신고서	
전축주	[①성명 ③주소]	②주민등록번호	
④부지위치		전화	
⑤지역			
⑥주용도		⑦지구	
구분	⑩신청부분	⑧공사종별	층·면적
면적	⑪신청이의부분(기준부분)	⑫설계	
⑬건축면적			
⑭연면적		⑯층	수
⑮전체		⑰면적	면적
⑯구조		⑱층	면적
⑰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⑲월	면적
(시장, 군수)	년 월 일	년 월 일	면적
신청자	구호		

건축(층·면적)		신고증	
전축주	[①성명 ③주소]	②주민등록번호	제 호
④부지위치			
⑤지역		⑥지구	구
⑦부지면적		⑧층	면적
⑨공사종별		⑩전체	면적
⑪구조		⑫층	면적
⑬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⑭준공예정일	년 월 일
신축법시행령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호		

7803-1-2A(1)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1973. 9. 6. 승인

7803-1-IIA(1)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1973. 9. 6. 승인

## 〔별지〕 제 4 호서식〕

제 4 호서식		
제 4 호서식		
① 총 주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성 명
⑤ 주 소		⑥ 주 소 및 사무
⑦ 성명 또는 상호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주 소
⑪ 허 치 번 호		⑫ 차 번 월 일
⑬ 운 도	⑭ 주 조	⑮ 차 번 월 일
⑯ 차 번 번 척	⑰ 종 수	⑱ 차 번( )
⑲ 차 번 월 일	⑲ 차 번 월 일	⑲ 차 번 월 일
⑳ 차 번 번 척	⑳ 차 번 척	⑳ 차 번 척
㉑ 차 번 일 자	㉑ 차 번 월 일	㉑ 차 번 월 일
㉒ 차 번 용		
㉓ 일 자		
㉔ 차 번 용		
위의 공사는 건축법 제 6조제 2항에 의하여 공사감리 중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전축주 및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았다. 전축법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보고자	금	전축사
(시장·군수) 김하		
7803-1-15 A (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m <sup>2</sup> )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m <sup>2</sup> )
1973. 9. 6승인		

## 〔별지〕 제 5 호서식〕

제 5 호서식		
제 5 호서식		
전 축 주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성 명
⑤ 주 소 및 사무		⑥ 주 소 및 사무
⑦ 성명 또는 상호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주 소
⑪ 차 번 번 호		⑫ 차 번 월 일
⑬ 차 번 번 척		⑭ 차 번 월 일
⑮ 차 번 월 일	⑯ 차 번 월 일	⑰ 차 번 월 일
⑲ 차 번 번 척	⑲ 차 번 척	⑲ 차 번 척
㉑ 차 번 일 자	㉑ 차 번 월 일	㉑ 차 번 월 일
㉒ 차 번 용		
㉓ 일 자		
㉔ 차 번 용		
이전축률이 주 힘 또는 주택을 포함하는 데에 만기체하시오		
㉕ 허 면 척	㉖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㉗ 주택신설여부
㉘ 소 유 면	자택, 임대주택, 공동주택, 기타	㉙ 주택신설여부
㉚ 주택자금융자	( ) 세대	( ) 세대
㉛ 주택연면적		주택자금( )원
㉜ 주택연면적		주택연면적
㉝ 저 살 면적의 %		전축법 제 7조제 1항의 %
(시장·군수) 김하	신고인	신고인
7803-1-15 A (1)		
1973. 9. 6승인		

주 공 선 고 서

[별지 제 6호서식]

전 축 주	① 성	명	⑨ 품 등 특별 호
	③ 주	소	
설 계자	④ 성	명	⑤ 자
	⑥ 주	소	
공 품 감리자	⑦ 성	명	⑧ 자
	⑨ 주	소	
공 품 공자	⑩ 성명 또는 상호		⑪ 자
	⑫ 주	소	
⑬ 예 지 위 치			
⑭ 허 가 번 호		⑮ 허가일자	년 월 일
⑯ 척 공 년 월 일		⑰ 준공일자	년 월 일
⑯자	여	⑯자	구
⑭ 대 지 빙 치		⑭ 대	수
⑭ 용 도		⑭ 구	조
⑭ 치 고 높 이		⑭ 치 마 높 이	
전 축 구	⑭ 치 높 이	⑭ 치 청 부 분	⑭ 친청이 외부분
물 둘			⑭ 합
⑭ 연 면 치			
⑭ 전 축 면 치			

190mm × 268mm(설문용지) 50g/m<sup>2</sup>)

귀하

3) 고양

୪୮

제 출판 제 7 조정 1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와 같으 신고합니다.

[별지] 제 7 호서식]

증필사집

건축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함을 증명함

77803-1-5A (1)  
1973.09.6 송일

190mm×268mm(49.2"×16") 60g/m<sup>2</sup>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7803-1-19A  
1973. 9. 6 수입

190mm x 268mm (A4) 50g/m<sup>2</sup>

하구(·군수) 장시

7803-1-18A  
1973. 9. 6 등일

190mm × 268mm (설문용지 50g/m<sup>2</sup>)

7803-1-19A  
1070

190mm x 268mm (A4) 50g/m<sup>2</sup>

부	여	국어장부본		
⑩	점	사	년	월
㉙	점	사	년	월

(서장·군수) 규 허  
신 죽 죽 은  
한국  
한국  
한국

제 호		증간검사필증	
전죽법 제 7조의 2 및 통법시행령 제 10조에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전죽법의 규정에 규정에 적합하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년	월
		일	
(시장·군수)			
④ 허가 번호		⑥ 허가 일자	
⑤ 허가 번호		년 월 일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별지 제12호서식]

전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

죽주·판지 자는 유지· 포는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호	전화
김진숙자	③주 소	④성 명	⑤자 칙( )급저축사 주소및 사무소명	⑥동·로·마을·길 번·월·일 보·고·일·자 번·월·일(체 회·보·고)
		⑦지번	⑧지번	⑨지번
		⑩면적	⑪면적	⑫면적
		⑬층수	⑭층수	⑮층수
		⑯층고	⑰층고	⑲층고
		⑳주도면적	㉑주도면적	㉒주도면적
		㉓구조	㉔구조	㉕구조
		㉖지붕재료	㉗지붕재료	㉘지붕재료
		㉙층별면적	㉚층별면적	㉛층별면적
		㉜바닥면적	㉝바닥면적	㉞바닥면적
		㉟층고	㉟층고	㉟층고
		㉞지상면적 제외면적	㉞지상면적 제외면적	㉞지상면적 제외면적
		㉟층고	㉟층고	㉟층고

7803-1-20A  
1973. 9. 6. 승인

190mm x 268mm (A4) - 8x1 50g/m<sup>2</sup>

하 귀 (시장, 군수)

1

ପ୍ରକାଶ

2. 0 | 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을 같다.

卷之三

⑤ 거실의 빛자이				
⑥ 회대 냄비				
⑦ 구락 면적				
⑧ 피난체 단위류				
⑨ 전축률의 출입도로에 이르는 통로의 속도				
⑩ 채고수 이				
⑪ 관리기간				
⑫ 변소	비상용 승강기	⑬ 애수 승강기		
전축 설비	⑭ 병, 전방 ⑮ 상용 조령장치	⑯ 관 ⑰ 기타		
⑲ 품공정사례증교부 후속부록은 경내현				
⑳ 기타변경사항				

[별지] 제13호서식]

지 표 물 축 건 법 위

① 위	위	
② 진	진	③ 궁사시궁자
④ 허	허	⑤ 허가변호
⑥ 주	주	
⑦ 위	위	

이 건축물은 전통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전축률로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고 있는 전축률입니다.

ଶ୍ରୀ

(서장, 군수)

7803-1-21A  
1973. 9. 6.  
수령

[별지] 제14호서식]

위 반전 측물의 설계 자동이 광학 보고서

설 계 자	①성 명	②자 켜 ( )급 전축사등록 제 호	
	③주 소 및 주소명	전화:	
공사감리자	④성 명	⑤자 켜 ( )급 전축사등록 제 호	
	⑥주 소 및 주소명	전화:	
공사시공자	⑦성명 또는 상호	⑧자 켜 전 설업(면 호) 제 호	
	⑨주 소	전화:	
건축주	⑩성 명	⑪주민등록 번호	
	⑫주 소	전화:	
⑬마지막자			
⑭하기번호		⑮회기일자	년 월 일
⑯자 약		⑰자 구	
⑭마지막자		⑯건축면적	
⑯구 조		⑰면 면적	
⑯종 수	지상( )	지하( )	⑲주요용도
⑳공사종별		⑳전 바울	
위반사정	㉑발행일자 ㉒내 용	㉓내 유통일자 ㉔내 유통일	㉕내 유통일자 ㉖내 유통일
책발자	㉗직무일자 ㉘직급성명	㉙내 유통일자 ㉚내 유통일	㉛내 유통일자 ㉜내 유통일
조치자	㉟일자 ㉟내 용	㉟내 유통일자 ㉟내 유통일	㉟내 유통일자 ㉟내 유통일

전축법 제42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이 의회여 외부자본 및 관련 설계자 등을 위  
와 같이 보고합니다.

(시장·군수)

7803-1-22A  
1973. 9. 6<sup>2</sup>01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m<sup>2</sup>

7803-1-22A  
1973. 9. 6<sup>2</sup>oL

750mm x 400mm





[별지 제18호서식]

건축 허가 표지

건축주	①성명	
	②주소	
설계자	③성명	
	④사무소명	
공사	⑤성명	
감리자	⑥사무소명	
공사	⑦성명 상호	
시공자	⑧주소	
공사현장	⑨성명	
관리자	⑩주소	
⑪허가번호	⑫허가일자	
⑬대지위치		
⑭건축면적	⑮연면적	
⑯주요용도	⑰층수	지상( ) 지하( )
⑲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허가기관)